

(별지 제4호 서식)

상표권 침해우려물품(수출·수입)사실 통보서

귀하

아래물품이 관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『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』 제2-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.

상표권 신고인은 아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제공할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(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. 다만,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위 기간은 상표권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편통보할 경우 발송일로부터 기산한다) 이내에 관세법 제2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당해물품 신고가격의 120%에 해당하는 관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, 은행지급보증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(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전부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및 주권. 다만, 사채권 중 보증사채권 이외의 사채권과 주권 중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제1부종목 이외의 주권은 제외)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해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

수출(입)신고자는 같은 기간 이내에 당해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, 상표권 신고인의 통관보류의 요청이 있고 당해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면 당해물품의 통관은 보류됩니다.

아 래

수출(입)신고번호		수출(입)신고일	
수출(입)자		상표권 신고인	
장치장소		B / L 번호	
수출입(신고)물품	품명		
	상표		
	수량	신고가격	

년 월 일
세 관 장